평창군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563

제출년월일 : 2026. 3. 3.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1. 제안이유

치유의 숲 체험료의 감면 사항을 추가하고, 체험료 일부 조정하여 다양한 계층에게 산림복지 서비스를 극대화 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조례 제9조 2항 체험료 50퍼센트 감면 사항을 추가 적용
- 당해 연도 고향사랑 기부금을 낸 기부자와, 평창군 교류협력 도시 거주자에게 감면 사항 추가

나. 조례 제8조 2항 별표1의 체험료를 조정하여 체험료의 단순화
- 산림치유 및 체험프로그램(온열, 다도·다례, 명상)의 각각 나눠진 체험료를 시간단위(2시간, 4시간)로 변경하여 단순화 시켜 체험객에게 다양하고 여러가지의 체험을 할 수있게 변경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산림기본법」 제4조, 「지방자치법」 제28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　　타

1) 입법예고(2026. 1. 8. ~ 1. 29.) 결과, 제출된 의견 없음

- 평창군 공고 제2026-66호, 산림과-1947(2026. 1. 30.)호

2) 규제심사 : 비규제 대상[기획예산과-311(2026. 1. 6.)호]

3)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[기획예산과-311(2026. 1. 6.)호]

4) 성별영향평가 : 개선사항없음[가족복지과-880(2026. 1. 7)호]

5) 법제심사 : 적정 [기획예산과-2370(2026. 2. 4.)호]

6) 조례·규칙심의회 심의 : 원안의결[기획예산과-3436(2026. 2. 25.)호]

평창군 조례 제 호

평창군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2항제1호카목을 파목으로 하고, 같은 호에 카목 및 타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카. 「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당해 연도에 평창군으로 고향사랑기부금을 낸 기부자

타. 「평창군 국내·외 도시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」 제14조에 따라 선정된 평창군 교류도시 주민

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산림치유 프로그램 체험료 및 시설이용료(제8조 관련)

<table>
<tr><th colspan="2" rowspan="2">구 분</th><th colspan="2">체험료 및 시설이용료</th><th rowspan="2">비 고</th></tr>
<tr><th>개인</th><th>단체</th></tr>
<tr><td rowspan="2">프로그램 참가료 (2시간)</td><td>일반</td><td>10,000원</td><td>9,000원</td><td rowspan="4">- 치유음료는 2시간 프로그램 참가 기준으로 1회제공
- 감면 대상자는 신분증과 함께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체험 당일 제시하여야 하며, 제시하지 못한 때에는 일반 체험료 적용
- 단체는 10명 이상이 동시에 동일 목적으로 신청하였을 때 적용
- 평창군민 체험료는 본인에게만 적용
- 청소년은 8세 이상부터 19세 이하 적용</td></tr>
<tr><td>청소년</td><td>8,000원</td><td>7,200원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프로그램 참가료 (4시간)</td><td>일반</td><td>20,000원</td><td>18,000원</td></tr>
<tr><td>청소년</td><td>16,000원</td><td>14,400원</td></tr>
<tr><td>시설</td><td>세미나실</td><td colspan="2">25,000원</td><td>- 세미나실 이용료는 1회 1시간 기준
-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적용</td></tr>
<tr><td colspan="5">체험프로그램 : 산림치유, 온열치유, 다도·다례치유, 명상치유
2시간 이용자 : 체험프로그램 중 2가지 프로그램 선택 체험
4시간 이용자 : 체험프로그램 전부 체험</td></tr>
</table>

※ 산림치유 프로그램에 필요한 재료비는 이용자 별도 부담

※ 세미나실 이용료는 감면 미적용

※ 기상여건에 따라 프로그램은 제한될 수 있음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9조(체험료의 감면) ① (생 략)	제9조(체험료의 감면) ① (현행과 같음)
1. ~ 11. (생 략)	1. ~ 11. (현행과 같음)
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체험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중복감면은 적용하지 않는다.	② (현행과 같음)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가. ~ 차.(생 략)	가. ~ 차.(현행과 같음)
<신 설>	카. 「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당해 연도에 평창군으로 고향사랑기부금을 낸 기부자
<신 설>	타. 「평창군 국내·외 도시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」 제14조에 따라 선정된 평창군 교류도시 주민
카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또는 단체	파. (현행 카목과 같음)

(현행)[별표 1]

산림치유 프로그램 체험료 및 시설이용료(제8조 관련)

<table>
<tr><th colspan="2" rowspan="2">구 분</th><th colspan="2">체험료 및 시설이용료</th><th rowspan="2">비 고</th></tr>
<tr><th>개인</th><th>단체</th></tr>
<tr><td rowspan="2">산림치유
프로그램</td><td>일반</td><td>5,000원</td><td>4,500원</td><td rowspan="8">- 산림치유 프로그램은 1인 2시간 기준
- 감면 대상자는 신분증과 함께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체험 당일 제시하여야 하며, 제시하지 못한 때에는 일반 체험료 적용
- 단체는 10명 이상이 동시에 동일 목적으로 신청하였을 때 적용
- 평창군민 체험료는 본인에게만 적용
- 청소년은 8세 이상부터 19세 이하 적용</td></tr>
<tr><td>청소년</td><td>4,000원</td><td>3,600원</td></tr>
<tr><td rowspan="6">체험</td><td>온열치유</td><td>10,000원
(치유음료 포함)</td><td>9,000원</td></tr>
<tr><td>다도·다례
치유</td><td>10,000원
(치유음료 포함)</td><td>9,000원</td></tr>
<tr><td>명상치유</td><td>10,000원
(치유음료 포함)</td><td>9,000원</td></tr>
<tr><td>치유음료</td><td>4,000원</td><td>3,600원</td></tr>
<tr><td>시설</td><td>세미나실</td><td colspan="2">25,000원</td><td>- 세미나실 이용료는 1회 1시간 기준
-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적용</td></tr>
</table>

※ 산림치유 프로그램에 필요한 재료비는 이용자 별도 부담

※ 세미나실 이용료는 감면 미적용

(개정안)[별표 1]

산림치유 프로그램 체험료 및 시설이용료(제8조 관련)

<table>
<tr><th colspan="2" rowspan="2">구 분</th><th colspan="2">체험료 및 시설이용료</th><th rowspan="2">비 고</th></tr>
<tr><th>개인</th><th>단체</th></tr>
<tr><td rowspan="2">프로그램
참가료
(2시간)</td><td>일반</td><td>10,000원</td><td>9,000원</td><td rowspan="4">- 치유음료는 2시간 프로그램 참가 기준으로 1회제공
- 감면 대상자는 신분증과 함께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체험 당일 제시하여야 하며, 제시하지 못한 때에는 일반 체험료 적용
- 단체는 10명 이상이 동시에 동일 목적으로 신청하였을 때 적용
- 평창군민 체험료는 본인에게만 적용
- 청소년은 8세 이상부터 19세 이하 적용</td></tr>
<tr><td>청소년</td><td>8,000원</td><td>7,200원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프로그램
참가료
(4시간)</td><td>일반</td><td>20,000원</td><td>18,000원</td></tr>
<tr><td>청소년</td><td>16,000원</td><td>14,400원</td></tr>
<tr><td>시설</td><td>세미나실</td><td colspan="2">25,000원</td><td>- 세미나실 이용료는 1회 1시간 기준
-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적용</td></tr>
<tr><td colspan="5">체험프로그램 : 산림치유, 온열치유, 다도·다례치유, 명상치유
2시간 이용자 : 체험프로그램 중 2가지 프로그램 선택 체험
4시간 이용자 : 체험프로그램 전부 체험 가능</td></tr>
</table>

※ 산림치유 프로그램에 필요한 재료비는 이용자 별도 부담

※ 세미나실 이용료는 감면 미적용

※ 기상여건에 따라 프로그램은 제한될 수 있음

관계법령 발췌

□ 산림기본법

제4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의 보전,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, 임업의 발전 및 산촌의 진흥 등 산림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법제 및 재정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□ 지방자치법

제28조(조례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비용추계서/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비용발생 요인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「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제3조제5항제1호

3. 미첨부 사유

- 본 의안의 시행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없음

4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 도시안전국 산림과장 이주하
연락처	(033) 330 - 2450